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개정(안)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헌법」. 국제연합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「교 육기본법 | , 「초·중등교육법 | 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1. "학교"란 전라북도 내에 소 재한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와 「유 아교육법 |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 는 유치원을 말한다.

- 2. "학생"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 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 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, 「유 아교육법」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.

- 4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과 그 밖의 사 4. 현행과 동일 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 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·공 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 다.

제3조(학생의 인권 보장원칙) ① 학생은 인

개 정 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대한민국헌법」, *UN*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「교육기 본법」、「초·중등교육법」、「유아교육법」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1. "학교"란 전라북도 내에 소 재한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와 「유 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*하* 는 유치원을 말한다.

- 2. 현행과 동일
- 3. "교직원"이란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9조 | 3. "교직원"이란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, 「유 아교육법」20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,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교원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교육감 소속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.
- 5. "학생의 인권"이란「대한민국헌법」과 5. "학생의 인권"이란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*가입·비 준한 국제인권조약과* 국제관습법에서 인정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 리 중 학생이 *누려야 하는* 모든 권리를 말 한다.

제3조*(학생인권 보장의 원칙)* ① 현행과

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 될 수 있으며,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.
-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.
- ④ <신 설>
- 제4조(책임과 의무) ① 전라북도교육감(이 제4조(책임과 의무) ① *교육감*은 교육·학예 하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육·학예에 관 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 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**학생 스스로** 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 호하고,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.
-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 을 스스로 보호하며, 타인의 인권을 존 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학생이 교사,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 임을 진다.
-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 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 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동일

- ② 학생의 인권은 *최대한 보장하며*. 이 조 례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.
- ③ 학생의 개성과 **자율성**은 학교생활에서 ③ 학생의 개성과 *자율은* 최대한 **존중한** 다.
 - ④ 전라북도교육감(이하"교육감"이라 한 다)은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 해 노력한다.
 - 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을 실현*하기 위해* 노력해야 한다.
-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의 장, 교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의 장, 교 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*학생이 스스* 로 인권을 학습하고 보호하며, 다른 사 람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.
 - ③ 학생은 *스스로 인권을 학습하며 자신* 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 하기 *위해 노력해야 한다.*
 - 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 경을 마련하기 *위해 노력해야 한다.*

제5조(학습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법령과 | 제5조(학습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법령과

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**의하지 아** 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다.

- 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·외 행 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 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예· 체능 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,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<신 설>

⑥ <신 설>

제6조(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)

-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 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, **보** |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, *방* 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 며,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

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*사유가 없는 한*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.

-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|② $\mathbf{\omega}$ 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 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·외 행사 참석을 강요*하지 않는다.*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1조에 근거 │③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1조에 근거 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 서 학생의 안전과 *학습권을 보장해야* 한 다.
 -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예· 체능 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, 북한 이탈 학생 등의 *학습권을 보장해야 한* 다.
 - ⑤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비대면 학습, 원격수업 등에서 학 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.
 - ⑥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.

제6조(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)

- ① 현행과 동일
 - *과후*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*하는* 정규교 과 이외 교육활동을 *강요하지 않으며*,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

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니 된다.

-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 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 | 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인권교육을 받을 권리)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 며, 그 행사로 **인하여** 불이익을 **받지 아** 니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 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)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.
-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 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**위하여**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<신 설>

④ <신 설>

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*지 않는다.*

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 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 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<u>해야</u> <u>한다.</u>

│제7조(인권교육을 받을 권리) ① 현행과 동 잌

-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**타인**의 |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*다른 사람*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지며,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*않* 는다.
 -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볼 수 있 는 곳에 게시하*고 보호자에게 안내해야* 하다.
 - 제8조(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)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명시 한 차별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 다.
 - ② *교육감*,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 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이 *제시한* 사유 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 기 *위해* 적극적으로 노력*해야 한다.*
 - ③ 학교는 모든 학생, 학급 그리고 동아 리에 교육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합리 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다.
 - ④ 학생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

제9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 ① 학 생은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모 든 물리적·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

-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.
- 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<신 설>

제10조(안전에 대한 권리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 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 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③<신 설>

- 제11조(휴식을 취할 권리) ① 학생은 건강 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위 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 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 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받지 않는다.

제9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 ① 현 행과 동일

- ② *학생에 대한* **체벌은 금지***한***다.**
-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, 가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, 가 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 치를 *취해야 한다.*
 - ④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 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행위나 혐오, 모욕,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(안전에 대한 권리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 리체계를 정비하고 *유지해야 한다.*

- 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과 재발방지를 *위해* 관계기관 및 지역주 민과 협력*한다.*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에 출입하는 차량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1조(휴식을 취할 권리) ① 학생은 건강 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*위 해*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 할 권리를 침해*하지 않는다.*

-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③ 현행과 동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 동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<신 설>
- 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학생은 복 장, 두발의 길이·모양·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교복을 입은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|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ϕ 생은 치마와 바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.
-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 *③ 학교는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* 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 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 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 다.
- 제13조(사생활의 자유)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・관 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.
-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. 소지 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.
-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, *휴대전* 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 <u>니</u>된다.
-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, 그 밖 41안)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를 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

-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과도한 과제나 수행평가 등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.
- │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현행과 동 일
- 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.
-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 분히 반영하되,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 록 한다.
- 제13조(사생활의 자유) ① 현행과 동일
-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*하지 않는다. 다만* 학생 과 교직원의 안전을 *위해 긴급하게 필* 요한 경우 최소한에 한하여 동성의 교 *직원이 실시하되*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*금지*한다.
 - *화*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*하지* 않는다.
 - *포함한*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**할**

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 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.

-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 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 다.
- 제14조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)
- ① 학생은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*고정형 명찰을* 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학교의 장은 교육비,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

수 없다.

- ④2안)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를 *포함한*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**할** 수 없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 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의 사용과 소지 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**는**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 게 알 수 있게 표시*해야 한다.*

제14조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)

- ① 학생은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징계기록, *병력, 상담기록, 성적지향 등* 사적인 정 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강요*하지 않는다.*
- ③ <u>학교의 장은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</u> 절차에 따라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. <u>처리·관리해야</u>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, 급식비 미납사실 倒 학교의 장은 교육비,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*학생*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 게 *제공하지 않는다.*
-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 ⑥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 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

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 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.

- 미치는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 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 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 여야 한다.
-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, 교육활동과 직 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,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 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6조(양심·종교의 자유) ① 학생은 양심 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③ <u>학교의 장은</u>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③ <u>학교의 설립자, 경영자, 학교의 장과</u>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 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함부로 *누설하지 않는다.*

제15조(정보에 관한 권리) ① 학생 또는 보 제15조(정보에 관한 권리) ① 학생 또는 보 호자는 학생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학생은 **학교에 대해** 학생에게 영향을 ② 학생은 *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* 예·결 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 - 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 당 정보를 공개*해야* 한다.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*해 야* 한다.
 -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<u>학생에 관한 기록</u> 이 부정확하거나, 교육활동과 직접 관 *련이 없거나*,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*때는*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 - 제16조(*양심과 사상·종교의 자유*) ① <u>학생</u> 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 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며 종교의 자유 를 가진다.
 - ② <u>학교의 설립자, 경영자, 학교의 장과</u> <u>교직원은</u> 학생에게 <u>사상</u>과 양심에 반하 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*하* 지 않는다.
 - *교직원은*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*하지 않는다.*

④ <신 설>

④ 학교의 설립자, 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 직원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 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 위를 하지 않는다.

제17조(표현의 자유)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- 제17조(표현의 자유) ①학생은 *다양한 수* 단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 *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* 권리를 가진 다.
-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 다.
-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 단, 학교 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 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, 장소, 방법에 관 하여 제한할 수 있다.
-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 단, 학교 의 장은 교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*위해* 이 조례 제19조제3항의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 의 규정으로 그 시간, 장소, 방법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④ 현행과 동일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.
-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, 인 ⑤ 학교의 장은 *교지 발간. 인터넷 누리집* 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과 행·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운영 등 언론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게시판 설치 등 홍보 에 필요한 시설과 행·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.

제18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① 동아리, 학생 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.

제18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① *학교의 장은* 동아리와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 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*을*

- 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 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는 성적,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 ③ 학교는 성적,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 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 선거에 의 해 선출된다.
-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- 1.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,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
 - 2. 학교운영,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 견을 개진할 권리
 - 3.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 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

4. <신 설>

제19조(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 여할 권리)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 정(이하'학교규정'이라 한다)의 제·개정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<신 설>

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 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 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, 학생

보장한다.
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 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 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·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.
 - 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 한*하지 않으며*,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 선거로 선출*한다.*
 -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- 1. 현행과 동일
 - 2. 학교운영,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교 무회의,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 견을 밝힐 권리
 - 3. 현행과 동일

4. 학생자치조직을 담당할 교사를 추천 할 권리

제19조(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 여할 권리) ① *학칙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 게 작성하며*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(이 하 '학교규정'이라 한다)의 제·개정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 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 인 절차를 거쳐 수렴*해야 하며*, 학생자

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 장**하여야**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·개정하고, 이를 학교 **홈페**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

-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<신 설>
-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**기구와** 학생들의 자 | ③ **학생자치조직을 포함한** 학생의 자발적 발적 결사는 학생의 **권리와 관련 있는**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 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 │ 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 안에 관하여 **학교운영위원회에** 참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 여를 보장**하여야** 한다.
- 제21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학습 부진, 폭력 피해, 가정 위기, 비행·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, 진 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 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.
-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다문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다문

치*조직*의 의견 제출권을 *보장해야 한다.*

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·개정하고, 이를 학교 *누리 집*에 게시해야 한다.

제20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

- ① 현행과 동일
- ②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, 성별, 직책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존중한 다.
- 결사는 학생의 *권리에 관한* 의견을 표명 할 권리를 가진다.
- ₫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 면담 *이나 기타의 방법을* 통하여 정기적으로 *학생의* 의견을 청취하*기 위해 노력해야* 한다.
- 안에 관하여 *교무회의. 학교운영위원회*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☞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참여 를 보장해야 한다.
- 제21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학습 부진, 폭력 피해, 가정 위기, 비행·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, 진 로 모색 등 *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등의* 지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.

화가정 등 경제·사회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 정하여야 한다.

-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 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 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 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. 정비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특히 보호 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**운용하 여야** 한다.
- 제22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| 제22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 ① 현행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② 학교의 장은 *학교의 청결한 환경 유지*, 도서관 공간 확보, 청결한 환경의 유지,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, 적절한 냉·난방 관리, 녹지공간 확 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 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화가정 등 경제·사회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*위해* 예산 *과 인력*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*베정* 해야 한다.

-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 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 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 **움**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∙ 정비*해야 한다.*
-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*위해 아동복지* <u>기관이나 인권보호기관과</u> 협조체계를 구축*해야* 하며,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*운용해야 한다.*

동일

- 충분한 도서실 공간과 장서 확보, 화장 실과 탈의실 그리고 휴게 공간 마련, 적절한 냉·난방 관리,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*을 조성하기 위해* 노력 해야 *한다.*
-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 계를 통해 *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* 성 평등을 보 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.

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

<u>④ <신 설></u>

⑤ <신 설>

⑥ <신 설>

- 제23조(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)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 하여 교육, 공연,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 램을 개발·운용**하여야** 한다.
-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**야** 한다.
- 제24조(급식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안전 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. 급식업체 등 급 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, 정 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

- 한 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.
- ⑤ 학생은 학교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며,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.
- 6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내에서 유·무선 통신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23조(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) ① 현행과 동일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 에 필요한 공간과 행·재정 지원을 해 *야 하며*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, 공연,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· 운용해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*위해*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*한* 다.
- 제24조(급식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안전 한 *식수와*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다.
-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, 급식업체 등 급 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*공개*하고, 정 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 *하여* 그 결과를 *급식 운영에* 반영해야 한다.
- │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*위해 노력해야* 한다.
- ④ 교육감은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**무상**급식 🗐 교육감은 유·초·중·고등학교*에 양질의*

을 실시하기 **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**.

⑤ <신 설>

- 제25조(건강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최적 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,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 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 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.
-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 ① 학생 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, 소명 기회 보 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.
- 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 로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아니 되며,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 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에 있어서 학생이 신념. 종교. 건강상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25조(건강에 관한 권리) ① 현행과 동일
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 리하는 등 여학생*에게* 불이익이 없도록 하다.
 - 고 *생리용품을 제공하*도록 노력해야 한 다.

│제26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 ① 현행 과 동일

-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 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 로 *해야* 하며, 이를 *위해* 지역사회, 보호 자 등과 협력해야 *한다.*
-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**공고하여서는** |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*공개하지 않 으며,*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|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*하지 않아야 한* 다.

- 제27조(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)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② 현행과 동일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
- 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 장받으며, 그 행사로 **인하여**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 며,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- 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② 현행과 동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29조(홍보) ① 교육감은 국제연합의「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 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·배 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<신 설>

- 제27조(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) ① 현행과 동일
-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 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 장받으며,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*않* 는다.
 - ④ 인권옹호관,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 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*해 야* 한다.
- 제28조(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) ① 교육감 | 제28조(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) ① 현행과 동일

 - │제29조(홍보) *① 교육감은 UN「아동의* 권리에 관한 협약/의 내용과 학생인 권을 포함한 이 조례의 내용을 일반인 용, 중·고등학생용, 초등학생용, 유치원 생용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·배 포하는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.
 - ② 학교의 장은 이 조례 전문을 학교 누 리집에 게시하고 이를 매년 가정통신

제30조(학생에 대한 인권교육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**하여야** 하며, 현장실습,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 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<신 설>

③ <신 설>

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 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 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1조(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) ① <신 설>

-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문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 *닥*.

- 제30조(학생에 대한 인권교육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*해야* 하며, 현장실습,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 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*을 포함해야* 한다.
-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노동인권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노동인권교육이란 「헌법」, 「근로기준법」등에 따라 학생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교육을 의미하 며,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 도와 감수성을 함양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 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.
- │*④* 학교의 장은 *학생의 자율적인* 인권 학 습과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*해야* 한 다.

제31조(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)

- ① 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연 2 회 이상 이수한다.
- ② 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 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*한다.*
-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| ③ 교육감은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와

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
-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 4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 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**하여야** 한다.
- 제32조(보호자의 권리와 교육)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교육 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 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(두 개의 항으로 분리)
- 제33조(인권실태 조사)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**하여** | **야** 한다.
-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$\mathbf{9}$ $\mathbf{1}$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$\mathbf{9}$ 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 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34조 (인권 모니터링) ① 교육감은 학생 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 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 원할 수 있다.
- 제35조(실천계획의 작성) ① 교육감은 학생 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 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·복지·휴식 시설을

자격연수 등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편성해야 한다.

- 수를 위한 교육자료 *또는*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·보급해야 *한다.*
- | 제32조(보호자의 권리와 교육)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교육 과 관련하여 교직원*에게*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 료를 개발·보급한다.
- 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, 보호자에 대 | ③ *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*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 회 이상 실시한다.
 - 제33조(인권실태 조사)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.
 - *해*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해야 *한다.*
 - 제34조 (인권 모니터링) ① 교육감은 *학생 인권침해*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해야 *한다.*
 -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*위해*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│제35조(*인권*실천계획의 *수립*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·복지·휴식 시

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 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공청 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 여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 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4. 8. 8>

<신 설>

설을 갖추기 *위해* 노력해야 *한다.*

-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*해 인권*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.
 -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공청 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*통해*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해야 *한다.*
 - ④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인권실천계 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35조의2(학생인권영향평가) ① 교육감 은 새로운 정책이나 조례를 입안하기 에 앞서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 여 이를 정책이나 조례에 반영하고 정 책 집행 후에는 학생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- ②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교육감이 제 정, 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 의 인권과 인권우호적인 교육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③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 생인권의 보장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

제36조(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) ① 교육 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**상황을** 조사하고, 그 개선을 위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**하여야 한다.**

-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 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 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시민활동 지원) 교육감은 학생의 인 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38조(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)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운동선수, 성 소수자,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.
-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·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<u>하여야</u>한다.
-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<u>대</u> <u>하여</u> 교내·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, 적절한 교 육과 평가방법<u>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</u>

<u>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</u> 다.

- 제36조(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) ① 교육 감은 <u>매년</u>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<u>현</u>황을 조사하고, 그 개선을 위해 <u>행·재정</u> 조치 를 취해야 <u>한다.</u>
-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37조(시민활동 지원) 교육감은 학생의 인 권보장을 *위해*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8조(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)

-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운동선수, 성 소수자, 학교부적응 학생, 북한이탈주민, 난민, 이주민가정</u>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·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.
-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<u>게</u> 교내·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고 참여를 보장하며, 적절한 교육과 평가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하여야 한다.

- 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.
-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·문화적 차 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· 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9조(학원, 대안학교, 평생교육 등)
-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, 평생교육을 위한 지 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 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 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.
-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 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,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 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 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 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- 제40조(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)
-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 倒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*학생이 경제적인* 어려움으로 테마식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 런해야 *한다.*
 -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<u>이</u> 교육활동에서 언어·문화적 차이 등으로 차별을 받지 *않고*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해야 *한다.*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·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*해야 한다.*

제39조(학원, 대안학교, 평생교육, *학교밖* 청소년 등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, 평생교 육, *학교밖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*

- ② 현행과 동일
-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「학원의 설립|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「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 | 호의 학원과 대안학교, 평생학습센터 등*에* 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 독한다.

제40조(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)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 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*위해*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인 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 - 1. 교육, 아동복지, 청소년, 의료, 법률, 인 1. 현행과 동일 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 - 2.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
 - 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
 - 4.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 -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두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관하여 심의한다.
 - 1.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
 - 2.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
 - 3.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

4. <신 설>

- 4.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 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
-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 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41조(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)

- ② 현행과 동일
-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*되. 특* 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.

 - 2. 현행과 동일
 - 3.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 3.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관심이 높 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 청한 *사람*
 - 4. 현행과 동일
 -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두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.
 -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<u>에</u>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<u>을</u> 심 의한다.
 - 1.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
 - 2.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
 - 3.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

4. 학생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
- <u>5.</u>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<u>해</u>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
- ⑥ 현행과 동일

제41조(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)

-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 위원회(이하'학생위원회'라 한다)를 둔 다.
 -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 ② 현행과 동일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 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 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*감이 위촉할 수 있다.*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.
 - 제출할 수 있다.
 - 1.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3.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 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│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**둘 수 있다.** <개정 2014. 8. 8>
- 제42조(학생인권 교육센터) ① 학생인권교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.
- 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3조(인권옹호관)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

-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**하여** 전라북도학생참여 견을 수렴하기 위*해*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 회(이하'학생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│③ *학생위원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.*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. 다만, *다만,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* 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절 차를 거쳐 10명 이내의 학생위원을 교육
-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한 *의견을*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*제출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* 있다.
 - 1. 현행과 동일
 - 2. 현행과 동일
 - 3. 현행과 동일
 - 4. 현행과 동일
 - 둔다.

제42조(학생인권 교육센터) ① 학생인권교 육을 위**하여**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육을 위*해*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 인권교육센터를 둔다.

-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<u>에 대</u> 2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<u>은</u> 교 육규칙으로 정한다.
 - │제43조(인권옹호관)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*그리고* 인권교육을 *위*

인권옹호관을 둔다.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-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, 학 ② 현행과 동일 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.
-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 ③ 현행과 동일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관련 법령, 그리고 국제연합의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 **여야** 한다.
- 제44조(겸직금지)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 원, 지방의회 의원, 공무원, 교직원을 겸 할 수 없다.
 - 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 2 현행과 동일 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 워을 겸할 수 없다.

제45조(인권옹호관의 직무) ① 인권옹호관 | 제45조(인권옹호관의 직무) ① 현행과 동일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
- 2.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
- 3.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
- 4.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·개발
- 5.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
- 6.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

해 인권옹호관을 둔다. 그 구성*과* 권한 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- │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「대 한민국헌법 $_{\parallel}$ 과 관련 법령, 그리고 UN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비롯 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 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*한다.*

제44조(겸직금지) ① 현행과 동일

공표

- 7. 학생 인권교육
- 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

제46조(사무국)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 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- ② 사무국에는 기획·정책의 수립, 인권침해 의 조사 및 구제,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 과 인원을 둔다.
-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47조(규정 개정 심의위원회) ① 학교는 제47조(규정 개정 심의위원회) ① 현행과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(이하 '규정 개정심의위원회'라 한다.)를 두어야 한 다.

-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, 보호자, ② 현행과 동일 학생대표로 구성하며, 인권 관련 지식이 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 다
-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, 절차, 규정 ③ 현행과 동일 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<신설>

제48조(교육지원청별 상담실) ① 각 교육지 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. <개정 2014. 8. 8>

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한 상담을 하고,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

제46조(사무국)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 을 *위해* 사무국을 둔다.

- ② 사무국에는 기획·정책의 수립, 인권침해 의 조사와 구제, 인권교육 등을 위한 조직 과 인원을 둔다.
- ③ 현행과 동일

동일

④ 학교의 장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 생위원은 전체 위원의 40% 이상으로 구성한다.

제48조(교육지원청별 상담실) ① 현행과 동 일

상담을 하고.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

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.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.

제49조(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)

-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 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, 교 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 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8>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 할 수 있다.
 - 1.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 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 우
 - 2.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 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, 수 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 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종결된 경우
 - 3.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 된 경우
 - 4.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 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,

옹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해야 한다.

제49조(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)

- ① ① 학생이 인권을 *침해당했거나* 침해당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 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*비밀을 유지해야 하며* 사건*을* 조사한 후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 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 *해야* 한다.
- ③ 현행과 동일
 - 1. 현행과 동일
 - 2. 현행과 동일

- 3. 현행과 동일
- 4.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*또는* 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지 *않다고* 인정되는 경 우
- 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,

-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⑤ 인권옹호관<u>으로부터</u>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<u>하여야</u> 하고,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 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<u>하여야</u> 한다.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<u>에</u>는 그 사유를 소명<u>하여야</u> 한다. <개정 2014. 8. 8>
- 제50조(조사)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**하여** 필 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8. 8>
-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 <u>에 대한</u>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 문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 구와 질의,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 히 응**하여야** 한다.
- 제5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<u>하</u> 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- 그 요지를 공표*해야* 한다.
- ⑤ 인권옹호관<u>에게</u>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고,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<u>해야</u>한다. 인권옹호관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<u>해야</u>한다.
- 제50조(조사)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<u>해</u> 필요 한 경우에는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과 학 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.
-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 조사<u>를 위해</u>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 구와 질의,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 히 응*해야* 한다.
- 제5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*위해*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